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 · 운영및 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289

제출년월일 : 1997. 6.

제 출 자 : 파주시장

☐제정사유

-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법률로 되어 있던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됨에 따라
- 청소년위원회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의거 기히 제정된 파주시 지방청소년 위원회 운영 조례와 신규로 제정하는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 기존 파주시 지방청소년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신규 조례(안)로 통폐합 함.
- 결함이 있는 자는 위원회 위원 및 지도위원이 될 수 없도록 위원의 결격사유를 정함(제3조)
- 지방청소년 위원회 위원 및 청소년지도위원은 시장이 위촉함.(제4조 제12조)
- 지방청소년 위원은 15인 이내,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제4조, 제14조)
- 위원 및 지도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함(제6조, 제15조)

-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지역주민이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 지도위원의 효율적 활동과 청소년 지도활동 등을 협의하기 위한 기구로 시읍면동 청소년지도협의회를 두도록 함(제17조)
- 협의회의 기능을 청소년 지도에 관한 지도방침 결정, 지도활동 계획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함(제18조)
- 위원회 및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 제정조례(안) _____ 붙임

☐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제22조
 - 경기도체육82501-641(96. 4. 27)호 공문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해당없음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 · 운영및 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관한조례(안)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파주시 지방 청소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 운영과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이하“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위촉 ·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청소년에 관한 정책 · 지도 · 자문을 위한 위원회와 지도위원의 구성 · 위촉 ·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 (위원의 결격 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 위원 및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 2장 지방청소년위원회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경찰서장과 교육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기타 위원은 관계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에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행정 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 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 · 지원
5. 지역 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됐을 때에는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위촉위원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0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 비치한다.

제11조 (출석 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 3장 청소년지도위원

제12조 (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당해 읍·면·동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청소년 기본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사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3.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4. 기타 청소년 지도 및 선도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 (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내의 유익환경의 조성
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등 유해 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지도 및 정화 활동
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중에 지득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읍면동별 여건(인구, 학교소재등)을 참작하여 위촉한다.

제15조 (지도위원의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기도래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6조 (증표 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지도위원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4장 청소년지도협의회

제17조 (협의회 구성) ①지도위원의 효율적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와 읍면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협의회에서 각각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지도에 관한 지도활동방향 설정
2. 청소년 지도활동 계획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지도위원의 상호 협력
4. 기타 청소년 지도에 필요한 사항

제19조 (회장의 직무)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운영을 통할한다.

②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장 보 칙

제20조 (위원회 및 협의회 지원)시장은 위원회 및 협의회의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과 지도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교육기회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 (준용)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과 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파주시 지방청 소년위원회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운영중인 지방청 소년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당시 기위촉되어있는 청소년지도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 표]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제16조 관련)

(앞 면)	(단 위 : c m)	(뒤 면)								
청소년지도위원증 ① ② ③ ④ 동	0.3 1 4 8.1 0.75 0.75 1 0.3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 함. ⑤파주시장(인) 이증을 주우신 분 은 가까운 우체 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0.3</td> <td style="width: 15%;">1.7</td> <td style="width: 15%;">3.2</td> <td style="width: 15%;">0.3</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5.5</td> </tr> </table>			0.3	1.7	3.2	0.3	5.5			
0.3	1.7	3.2	0.3							
5.5										

(비 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①사진 (4.9cm×4cm)

②청소년지도위원증의 번호

③성 명

④소속기관명

⑤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1996. 3. 1) 조례 제6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관계공무원·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는 다음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시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
5.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3조(실무위원회 설치)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방청소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실무위원회 구성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가정복지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청소년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학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정 또는 심의한다.

1.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사전에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항

2.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관계기관간의 실무적인 협조사항

4. 기타 청소년의 육성등에 관한 사항과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실무위원회에서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 때에는 이를 파주시지방청소년 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 5 조 (위원의 임기) 지방청소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6 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각 그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2인이상인 위원회의 경우에는 부위원장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 7 조 (회의) ①각 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 조 (간사) ①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지방청소년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소속직원중에서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지명 한다.

제 9 조 (수당등)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중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0 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 11 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청소년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3. 青少年育성을 위한 主要施策의 評價 및 制度改善에 관한 사항
4. 2이상의 部處에 관련되는 主要 青少年育成政策에 관한 사항
5. 기타 委員長이 審議에 부치는 사항

③委員會는 第2項의 審議事項을 미리 檢討하고 관계機關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게 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青少年育成實務委員會(이하 “實務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④委員會 및 實務委員會의 구성·組織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3條 (地方青少年委員會) ①青少年育成등에 관하여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特別市·廣域市·道 및 市·郡·區(自治區를 말한다)에 地方青少年委員會를 둔다. <改正 95·12·29>

②地方青少年委員會의 구성·組織 기타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 <改正 95·12·29>

第14條 (青少年基本計劃의 수립) ①國家는 青少年育成에 관한 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每 10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青少年育成에 관한 基本方向
2. 青少年育成에 관한 推進目標
3. 青少年育成에 관한 機能의 調整
4. 青少年育成에 必要되는 財源의 調達方法
5. 기타 青少年育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文化體育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 및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國家의 施行計劃을 總括·調整한다. <改正 93·3·6>

第15條 (年度別 施行計劃의 수립)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에 의하여 年度別 施行計劃을 각각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第16條 (計劃樹立의 協力)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과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年度別 施行計劃의 수립·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公共機關·社會團體 기타 民間企業體의 長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者는 특별한 情정이 없는 한 이에 協力

②國家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青少年指導士 養成機關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養成에 필요한 經費를 부담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5.12.29)

第21條 (青少年指導士의 配置등) ①修鍊施設 및 青少年團體는 青少年의 건전한 修鍊活動을 指導하게 하기 위하여 青少年指導士를 配置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青少年指導士의 配置對象 및 配置基準은 文化體育部令으로 정한다.

③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修鍊施設 또는 青少年團體등에서 自願하여 青少年指導를 행하는 者에 대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그 活動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全文改正 95.12.29)

第22條 (青少年指導委員) ①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青少年의 指導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青少年指導委員會를 위촉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青少年指導委員會의 資格・委嘱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 <改正 95.12.29>

第23條 (青少年團體의 육성・지원등)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青少年團體의 組織과 活動에 필요한 行政的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豫算의 범위안에서 그 活動등에 필요한 經費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개인・法人 또는 團體는 青少年團體의 施設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金錢 기타 財産을 出捐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 및 보조범위등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4條 (收益事業) ①青少年團體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認可官廳의 승인을 얻어 修鍊活動과 관련한 收益事業을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益事業의 범위, 收益金의 사용등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5條 (韓國青少年團體協議會) ①青少年團體는 青少年育成을 위한 다음 各號의 活動등을 하기 위하여 文化體育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韓國青少年團體協議會 (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改正 93.3.6. 95.12.29>

1. 會員團體가 행하는 사업과 活動에 대한 협조 支援

(추. 70)

제24조 (청소년지도위원) ①및 ②삭제 <96.6.29>

③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96.6.29>

1.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 환경의 정화활동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지도위원에게 청소년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위원이 제3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이비·교육기회의 제공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6.6.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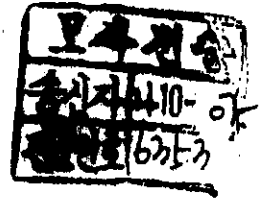
⑤청소년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청소년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등을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읍·면·동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개정 96.6.29>

제25조 (청소년단체의 지원 및 보조의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단체에 지원 및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96.6.29>

1. 청소년단체 조직의 유지·발전을 위한 지원 및 운영경비 보조
2. 수련활동사업에 관한 지원 및 사업비 보조
3.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시설·설비등의 지원 및 행사비 보조
4.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수련시설의 설치등에 필요한 국·공유 재산의 대부·사용 및 수익을 위한 지원
5. 수련거리의 개발·보급등에 관한 지원 및 보조
6. 청소년지도자 연수 및 국제교류등에 관한 지원 및 보조
7. 기타 청소년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소년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지원 및 보조

제26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단체가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경 기 도

우441-701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3가 1번지 / 전화 (0331)42-8970 / 전승 6847 담당 정성인

문서번호 제록 82501-641

시행일자 1996. 4. 11

(경우)

관 료 관공국 관공

참 조 정소년법무담당과장

선			지	
정	일 자		시	
수	연 도	1996	결	과 장
저	리		재	
담	당	자	결	과 장
			결	

제 록 정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 표준안 통보

1. 정기 82501-196('96.4.22)호의 이점입니다.

2. 정소년기본법 개정('95.12.29)에 따른 하위법령제정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야 할 조례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표준안을 작성 통보하오니 조례제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정대상조례

- 지방정소년위원회 구성·운영(법 제13조 관련)
- 정소년지도위원의 위촉·운영(법 제22조 관련)
- 지방정소년단체협의회 구성·운영(법 제25조의2 관련)

나. 시행시기 : '96. 6. 30

덧붙임 : 조례표준안 3부. 끝.

경 기 도 지

체육청소년과장 전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표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시·도, 시·군·구) 지방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기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_____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단체장이 위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일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

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지명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운영중인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표준안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청소년장, 출장소장 포함)이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자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면·동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의추한다.

제 3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자

제 4조 (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6. 국민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지득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
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 5조 (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10인 이내
로 하되 당해 읍·면·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
의 특수성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 6조 (증표교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
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
은 별표와 같다.

제 7조 (필요경비등 지원)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4
조 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8조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
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진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동, 시·군·구,
시·도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제7조관련)

(앞 면)	(단위 : cm)	(뒷 면)				
청소년지도위원증 ① ⑤ ② ③ ④ ○ ○ 읍.면.동	0.3 1 4 8.1 0.75 0.75 1 0.3 4.9×7.5	성명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주소 _____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제22조의 규 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 함 ⑥ (인)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국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border="1" style="margin: 0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2px 10px;">0.3 1.7</td> <td style="padding: 2px 10px;">3.2 0.3</td> </tr> <tr> <td colspan="2"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5.5</td> </tr> </table>	0.3 1.7	3.2 0.3	5.5	
0.3 1.7	3.2 0.3					
5.5						

(비 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m² 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칸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 ①사진 (4.9cm×4cm)
- ②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 ③성 명
- ④소속기관명
- ⑤철인(발급기관의 철인)
- ⑥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표준안

제1조(설립근거 및 명칭)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는 청소년기본법 제 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며, 그 명칭은 “○○시·도(시·군·구) 청소년단체협의회”라 한다.

제2조(목적)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중앙과 지방청소년 단체간의 상호 협력 및 교류를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협의회의 사무소는 해당 시·도(시·군·구) 관할지역내에 둔다.

제4조(사업) ①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지원
 2. 국내 및 외국청소년 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
 3. 청소년관련 도서 및 간행물의 발간과 홍보활동
 4. 청소년문제와 활동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
 5. 수련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지원
 6. 우수회원단체, 모범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포상
 7.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의 위탁사업
 8. 기타 청소년건전육성 및 청소년단체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
- ②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법인설립) ①협의회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얻어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의 설립허가, 신청서류, 허가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협력) 협의회는 청소년기본법 제25조제1항제7호에 의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의 협조 및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제6조(준용) 협의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6월30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의회 제111회 정기의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7. 1. 13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조례 제2724호

경기도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제25조의2,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경기도청소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를 말한다.

②“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 제6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③“경기도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25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 2 장 경기도청소년위원회 운영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경기도교육감,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도의원, 관계행정기관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도지사가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의사)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체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장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운영

제12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시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이익금
3. 기타출연금 및 수익금
4.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수입금

②도지사는 매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청소년육성지원기금)구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관리·운용한다.

1. 한국은행법, 체신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각종 예금종 조건과 수익률에 있어 가장 유리한 종목에의 예탁
2. 단기금융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거 설립된 금융회사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각종 금융 및 신탁상품중 조건과 수익률에 있어 가장 유리한 종목을 통한 투자 또는 신탁

③기금집행은 당해년도 이자수입금의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다만,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출연한 기금에 관하여는 그 출연기금의 범위안에서 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 운용심의회(이하 "기금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기금심의회는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제15조(기금심의회의 기능) 기금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금지원 대상자 및 지원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제1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1. 모범청소년에 대한 장학 지원사업
2.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3. 공공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4.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5.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
6. 청소년교류의 지원
7. 기타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제17조(지원대상 등) ①제16조 각호중 개인에 대한 지원은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경기도내에 거주하는 자로하며, 소정의 선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원,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기금운용계획) ①기금운용계획은 매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기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지원대상자 및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문화관광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체육청소년과장
3. 기금출납원 : 청소년계장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결산 및 보고) ①도지사는 매회계연도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경기도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 지원

제21조(사무소의 소재지) “경기도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설립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 등기한곳으로 한다.

제22조(사업)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 지원
2. 국내 및 외국청소년 단체와의 협력과 교류
3. 청소년관련 도서 및 간행물의 발간과 홍보활동
4. 청소년문제와 활동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자료수집
5. 수련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지원
6. 우수회원단체, 모범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포상
7.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위탁사업
8. 기타 청소년건전육성 및 청소년단체의 육성등에 필요한 사업

②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법인설립) ①협의회는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설립허가 신청서류, 허가절차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협의회 가입회원 및 협력) ①협의회 가입회원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8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정의한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 사회단체설립신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한 정관상 청소년선도 및 보호사업으로 등록된 단체를 원으로 한다.

②협의회는 청소년기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와의 협조 지원체제를 확립한다.

제25조(준용) 협의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
 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경기도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및 경기도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조성된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 기금은 이 조례에 의
 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이전에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이 조례 시행이전에 구성된 경기도지방청소년위원회위원은 1996년도 임기말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 경기도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이유

'95.12.29 청소년기본법의 전문개정과 '96.6.29시행령 전문이 개정됨에 따라
 시·도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청소년전선육성과 지원 사업추진에 필
 요한 제반규정을 정하고자 함.

◇ 주 요 골 자

가. 청소년 전선육성에 관한 중요정책의 조정 및 협조를 위하여 "경기도청소
 년위원회"설치(종전조례에 의하여 기운영, 제3조)

나.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해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운영"수립 시행
 (종전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기운영, 제13조)

다.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청소
 년육성기금운용위원회"를 두되, 기금심의회는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토록함(제14조 1항, 제14조 2항)

라.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년도 개시 30일 이내에 기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도록 함(종전 경기도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기운영, 제18조)

청소년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 지원"근거 마련(제23조)

법무담당관실 제정

이회 제111회 정기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청소년육성기금징수 조례중개정조례를
 이의한다

1997. 1. 13.

경기도청